

# ISO 환경규격제정에 따른 대응방안

■ 환경처

**최**근에 환경라운드(Green Round : GR)와 관련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기업의 전생산공정과 제품이 환경친화적이고 환경관리체계가 적절한지를 인정해주는 국제표준규격제도(ISO 18000시리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구환경보호를 명목으로 새로운 무역규제수단으로 등장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란에서는 국제표준규격제도의 환경분야 규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 기구의 설립목적은 상품 및 용역의 국제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표준화개발 및 관련 활동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기구는 1926년도에 국가표준협회 국제연맹으로 발족되어 UN 표준화조정 위원회로 개정(1944년)되었다가 국제표준화기구(1946년)로 개칭되었으며 회원국은 92개국('92년 현재)으로,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가입하였다. 또한 이 기구의 조직으로는 총회, 이사회(Council), 6개의 자문위원회, 중앙사무국, 집행부, 기술부(Technical Board)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부에는 기술위원회가 이

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와 실무작업반 등이 있다.

한편 ISO 규격의 기본성격은 주로 기계, 전자 등 광공업분야의 형상, 치수, 구조 및 시험·검사방법 등을 정하거나 자동차 등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기 위한 품질규격(ISO 9000 Series)으로 각국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규격이다.

## 권장규격이지만, 간접적인 무역규제수단

현재 제정된 규격은 국제환경분야 규격으로서 대기(TC 146 Air Quality), 수질(TC 147 Water Quality), 미생물분석(TC 34 Microbiological Analysis), 진동동(TC 108 Vibration and Shock), 음향(TC 430 Acoustics) 등이며 이중 대부분의 규격이 오염물질의 측정방법 및 샘플링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공정 시험법에 해당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양(TC 190 Soil Quality), 폐기물(TC 200 Solid Waste), 환경관리(TC 207 Environmental Management)에 대한 규격을 제정중에 있으며, 특히 기업의 환경관리



◀ 일부 EC 국가를 중심으로 5년뒤에 ISO규격을 권장규격이 아닌 강제규격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또한 향후 Green Round 협상과 관련하여 무역규제 수단의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체제와 활동이 환경친화적임을 인증해줌으로써 산업활동의 신뢰성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관리규격(TC 207)은 환경관리체계(TC 207 / SCI), 환경감사(TC 207 / SC2), 환경마크(TC 207 / SC3), 환경성능평가(TC 207 / SC4), 라이프사이클 분석(TC 207 / SC5) 등에 작업방향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국제환경규격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은 특정상품이 국가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각 기업체에서 상품제조시 반드시 KS규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인명의 피해나 화재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또는 건축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품목 및 가공기술에 대해서는 KS규격사용의무화가 가능한 것처럼 ISO규격은 KS 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장규격이다. 따라서 기존에 제정된 ISO의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 규격은 샘플링방법,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적으나 다만, 수요자측에서 ISO규격을 요구하는 경우 간접적인 무역규제수단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측정장비 도입시 미국환경청의 승인(Approval)을 받은 측정기를 제한 구매한 것도 그 예다.

### 측정분석방법에 관한 규격과 환경관리규격

'93. 6월 신설된 환경관리기술위원회(TC 207)에서 제정예정인 환경관리규격은 ISO / TC 176(품질관리 : Quality Management)의 9000시리즈와 유사한 성격을 떨 것으로 보이나 환경관리에 관한 ISO기준이 제정될 경우('95년말 또는 '96년) 기업체의 생산활동에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것이고, 동규격을 획득한 기업은 국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일부 EC 국가를 중심으로 5년뒤에 ISO규격을 권장규격이 아닌 강제규격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또한 향후 Green Round협상과 관련하여 무역규제 수단의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ISO 환경규격제정 관련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측정분석방법에 관한 규격과 환경관리규

### 환경관리에 관한 ISO기준이 제정될

경우('95년말 또는 '96년)

기업체의 생산활동에서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은

커질 것이고, 동규격을 획득한 기업은

국제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가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격 등 ISO 환경규격의 성격에 따라 두가지의 대응체계가 필요된다.

첫째, 우리의 환경오염공정 시험법에 해당하는 측정분석방법에 관한 규격에 대해서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94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연구사업의 제목은 "ISO 규격과 우리의 환경오염공정시험법에 관한 비교분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이고 동 연구사업의 목적은 ISO 규격과 환경처의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을 비교분석하여 환경처의 측정방법 개선·발전 및 ISO규격의 도입방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환경처의 측정시험방법과 KS환경규격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둘째, '95-'96년까지 제정예정인 환경관리규격에 대해서는 공업진흥청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관리규격과 관련하여 ISO의 기술위원회에서는 '94-'95년중에 약 30회의 소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회의가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바, 공업진흥청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환경보전협회, 삼성, 현대, 대우, 럭키 등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위주의 실무작업반을 편성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토록하여 동향파악 및 회의자료 분석보고 등을 통하여 대비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을 이유로한 무역규제가 강화될 전망임에 따라 또하나의 무역규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ISO의 국제환경규격 제정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환경법규 및 기준과 산업체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